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3,613,313,000	108,397,000
일 반 회 계	3,187,984,000	95,639,000
특 별 회 계	425,329,000	12,758,00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14,883,000	6,446,000
기 타 특 별 회 계	210,446,000	6,312,000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8,860,000	265,00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195,000,000	5,850,00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6,586,000	197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396,42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